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

- 금융감독원, 2021. 1

##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K-IFRS 회계처리 역량을 지원하고 회계정보이용자들의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 금년 상반기에 K-IFRS 질의회신 내역 12건('16~'19년 질의 건)을 사례화하여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29건('11~'15년 질의 건)을 추가로 공개\*
    - \* 회계당국은 회계감독 선진화방안('19.6월)과 질의회신제도 개선방안('20.5월)에서 매년 연간 질의회신을 사례화하여 공개(과거 10년치 포함)하겠다고 발표
- 그간 기업들은 원칙 중심의 IFRS를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K-IFRS 질의회신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과거 질의회신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
  -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K-IFRS 질의회신 내용을 알기 쉽게 사례화하고, 회신 과정에서 논의된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함께 제공

## II. K-IFRS 질의회신 사례 내용

- 금번 공개사례는 금감원에서 회신한 '11년~'15년 K-IFRS 질의회신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주제를 선별하여
  - 금융상품 13건주1), 주식기준보상 3건주2), 공정가치 측정 3건주3), 연결재무제표 3건주4),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2건주5) 등 총 29건을 공개
  - 각 건은 ①현황, ②질의사항, ③회신내용, ④판단근거로 구성되고, 이용자들의 이해제고를 위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
    - 주 1)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등
    - 2) 종속기업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등
    - 3)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등
    - 4) 청산예정 종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등
    - 5)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등

**사례1**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현황) A사는 출자전환을 통해 B사 주식(61%)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나, 채권단 공동관리로 인해 의결권이 제한되어 B사 주식에 대해 지분법을 적용 중

- B사의 계속되는 영업부진으로 인해 A사는 보유 중인 B사 주식에 대해 손상차손을 인식하였고, 이후 B사는 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아 관리종목으로 지정됨

(질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지분법 적용)의 손상검사를 위한 회수가 능액 산정시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 측정방법은?

(회신) 관리종목 지정 이후의 주가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 주가를 사용하여 처분부대원가를 뺀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적절함

관리종목 지정된 상장사



손상징후 발생

활성시장 공시가격 여부?

순공정가치 측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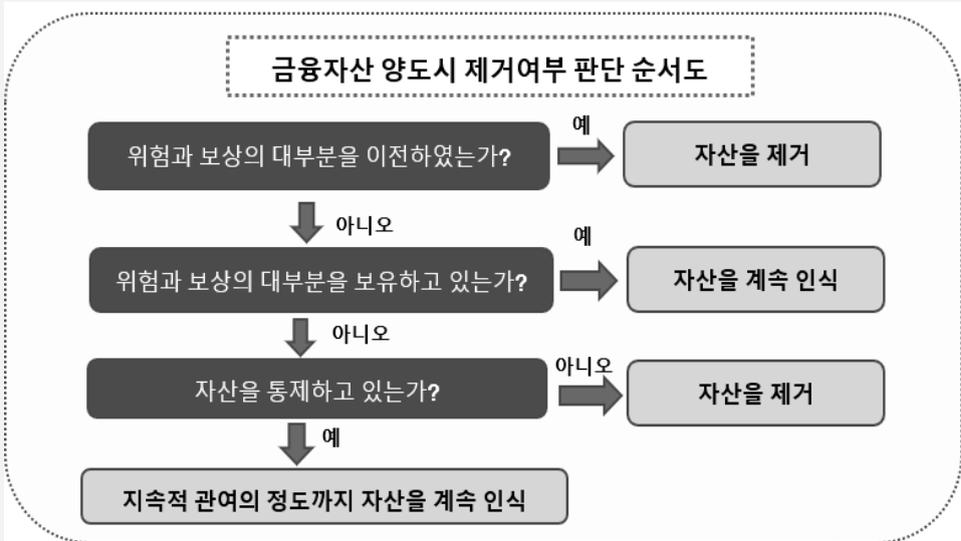


(거래의 빈도와 규모가 충분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를 사용하여 순공정가치 측정

**사례2**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 (현황) 은행이 A기금과 체결한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부실채권을 A기금에게 양도하였으나,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이전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 은행은 부실채권 양도 이후 이를 재매입하거나 A기금의 손실을 보전할 의무가 없으며, 양도한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채권회수 등의 업무는 A기금의 고유권한으로 부실채권을 양도한 은행은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질의)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 (회신) 은행이 부실채권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않고 A기금에 이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A기금이 매입한 부실채권을 통제한다면 은행은 양도한 부실채권을 제거 가능함



### III. 향후 계획

- K-IFRS 질의회신 사례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acct.fss.or.kr)을 통해 공개하고 주제별 검색이 용이하도록 홈페이지 메뉴를 개선할 예정이며,
  - 앞으로도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K-IFRS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질의회신 사례를 매년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 상장협·코협·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공개된 질의회신 사례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예정



## 붙임1

## '20년 하반기 공개대상 K-IFRS 질의회신 목록

구분	질의회신 공개번호	제목	회신일
1	2020-FSSQA13	중속회사 경영진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회계처리	'11. 3. 4.
2	2020-FSSQA14	인적분할된 분할중속회사의 회계처리	'11. 3. 4.
3	2020-FSSQA15	증권회사의 위탁매매 관련 회계처리	'11. 8. 17.
4	2020-FSSQA16	주택담보대출채권 양도 시 제거 관련 회계처리	'11. 9. 28.
5	2020-FSSQA17	부동산투자회사의 불입자본(보통주) 회계처리	'11. 11. 18.
6	2020-FSSQA18	비상장 중간지배회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 관련	'12. 1. 5.
7	2020-FSSQA19	별도재무제표 상 이연법인세자산 인식 가능 여부	'12. 1. 13.
8	2020-FSSQA20	피투자회사의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지분법 회계처리	'12. 5. 8.
9	2020-FSSQA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의 합병 시 전환권 회계처리	'12. 5. 9.
10	2020-FSSQA22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 시 식별불가능한 비용의 측정시점 관련	'12. 5. 10.
11	2020-FSSQA23	청산예정 중속회사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13. 3. 19.
12	2020-FSSQA24	주주 간 계약에 따른 금융부채 인식 관련 회계처리	'13. 3. 26.
13	2020-FSSQA25	양도한 부실채권 제거 관련 회계처리	'13. 4. 19.
14	2020-FSSQA26	채권 장외거래에 관한 회계처리	'13. 4. 29.
15	2020-FSSQA2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처분제한 상장주식의 공정가치 측정 회계처리	'13. 5. 13.
16	2020-FSSQA28	원금보전 약정 신탁 연결시 특별유보금 회계처리	'13. 6. 7.
17	2020-FSSQA29	기업회생으로 취득한 출자전환 주식의 지분법 적용 시점 관련	'13. 7. 17.
18	2020-FSSQA30	주식매매계약 시 사후정산약정 회계처리	'13. 7. 22.
19	2020-FSSQA31	위험회피효과 평가 시 예외조항 적용 관련	'13. 7. 25.
20	2020-FSSQA32	일방의 선택에 의해 거래당사자간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의 회계처리	'13. 9. 4.
21	2020-FSSQA33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관계기업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회계처리	'13. 11. 12.
22	2020-FSSQA34	지급준비금 산출 회수경험을 변경 시 회계처리	'14. 1. 29.
23	2020-FSSQA35	주가지수 연계 금융상품 분류 관련 회계처리	'14. 2. 11.
24	2020-FSSQA36	총수익스왑 조건부 주식 양도 관련 회계처리	'14. 4. 25.
25	2020-FSSQA37	제거되지 않은 양도주식의 구분 표시 관련 회계처리	'14. 5. 29.
26	2020-FSSQA38	중간재무제표 비교표시 관련	'14. 6. 19.
27	2020-FSSQA39	중속기업이 지배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별도재무제표 관련 회계처리	'14. 9. 19.
28	2020-FSSQA40	수익공유형모기지론 관련 회계처리	'15. 6. 22.
29	2020-FSSQA41	ETF 공정가치 측정 관련 회계처리	'15. 11. 10.

**붙임2**

**K-IFRS 질의회신 사례 예시**

〈청산예정 종속기업의 연결범위 포함 여부〉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질의와 이에 대한 회신을 요약한 것입니다.  
 본 질의에 대한 회신은 주어진 질의에서 제시된 조건 및 사실 등을 전제로 도출된 것이므로, 질의상의 조건 또는 사실과 동일하지 않거나, 유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누락 또는 변경된 상황에서는 이 회신에 따른 회계처리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신의견은 일반화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회신의견은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또는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의 새로운 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절차를 거쳐 변경 또는 새로운 의견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1**    **현 황**

- A사의 종속기업인 B사는 'x1년말부터 파산신청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였으나, 일정이 지연되어 'x2.2월 파산신청을 접수하였고, 'x2.3월 중 파산관재인이 선임됨

**2**    **질의 사항**

- (질의) A사의 'x1년말 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해야 하는지?
  - (답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됨
  - (을설) B사는 A사의 연결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3**    **회신**

- 청산예정 종속기업을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4**    **판단근거**

- (관련규정) 舊K-IFR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문단 12, 13, 32 및 34\*
  - \* 현행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B35, B37 및 25로 대체
- 舊K-IFRS 제1027호 문단 12 및 13\*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4 및 B35로 대체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봄



- 또한, 舊K-IFRS 제1027호 문단 32 및 34\*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 현행 K-IFRS 제1110호 문단 B37 및 25로 대체
  - 지배기업은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해야 함
-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이로 인해 A사가 소유하는 손자회사에 대한 과반수 의결권의 행사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A사(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청산예정인 B사(종속기업)를 연결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정부, 법원, 관재인, 채권자, 청산인, 감독당국이 관련 활동을 지시한다면, 피투자자의 의결권 과반수를 소유하는 투자자는 힘을 가질 수 없으며 (K-IFRS 1110.B37)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한다면, 지배력을 상실한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함(K-IFRS 1110.25)
- K-IFRS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문단 4 및 문단 B35에 따르면 지배기업은 종속기업을 포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며
  - 투자자가 직접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피투자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투자자가 피투자기업을 지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함
- 다만, K-IFRS 제1110호 문단 B37에 따르면 종속기업이 법원,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으며
  - 지배기업은 K-IFRS 제1110호 문단 25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제거하는 것이 적절함
- 본 질의의 경우 B사는 'x1년말 시점에 폐업, 임직원 퇴사 등으로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황이나, 법원 및 관재인 등의 통제를 받게 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A사의 B사에 대한 지배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A사는 'x1년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B사에 대하여 여전히 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B사를 연결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